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효과적 추진과 현장 안착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을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기준 마련 및 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 「산학협력법 시행령」 상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정비하고, 상위법과 어긋나거나 애매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체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전문학사와 동일한 수준(최대 3년)으로 완화 (안 제6조 제2항 개정)

나. 법 제8조의3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업무추진상 예측가능성 제고 (안 제8조의3 신설)

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의2)

1) 현장실습의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운영 기준 마련 (제1항 각 호)

2) 법 제1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비 세부 산정
기준 규정 (제2항 각 호)

3) 현장실습 세부 운영기준, 실습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정하도록 위임 (제3항)

라.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 회계처리 주체에 산학협력단장 포함
(안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개정)

마. 학연교수 제도 활용 대상기관에 ‘한국뇌연구원’ 신설 (안 제49조
제1항 제7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년 이내로 한다”를 “고등교육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계약학과 등의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운영학과, 학생 수 등 고시에서 정하는 자료를 자체점검 결과와 함께 매년도 5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폐지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전체 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이하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자율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전체 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을 의미한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의 산정(算定) :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주 단위 실습시간 수(1주 동안의 실습시간 수와 1주 기준 1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와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의 산정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단위 실습시간 수(제1호에 따른 주 단위 실습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와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현장실습 수업의 구분 및 운영과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의 세부운영기준 및 지급 방식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 중 “장”을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장”을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 뇌연구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생략)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u>2년 이내로 한다.</u> ③ ~ ⑤ (생략)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고등교육법 제48조 제1항</u> <u>규정에 따른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8조의3(계약학과 등의 보고 등) <u>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운영학과, 학생수 등 고시에서 정하는 자료를 자체점검 결과와 함께 매년도 5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폐지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u>
<u><신설></u>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u>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한다.</u>

	<u>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전체 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이하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u> <u>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자율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전체 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u> <u>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을 의미한다.</u> <u>1. 주 단위 실습지원비의 산정(算定) :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주 단위 실습시간 수(1주 동안의 실습시간 수와 1주 기준 1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와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u>
--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의 산정 : <u>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u> <u>에 월 단위 실습시간 수(제1호</u> <u>에 따른 주 단위 실습시간 수</u> <u>에 1년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u> <u>을 12로 나눈 시간 수)와 직무</u> <u>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u> <u>금액 이상</u>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현장실습 수업의 구분 및 운영과 현장실 습지원비 지급의 세부운영기준 및 지급 방식 등은 교육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 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 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 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 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 ----- <u>장 또는 산학협력</u> <u>단장</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 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 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 <u>장 또는 산학협</u> <u>력단장</u>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 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 뇌연구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845